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0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 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| 국무위원 김현수<br>(농림축산식품부장관) |
| 제출연월일 | 2020. . .  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유림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낮추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, 법 제15조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을 국립수목원장, 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도 가능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며, 그 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률의 현행 법령 명 및 용어 현행화(안 제13조 제1항, 제2항 및 제4항, 안 제21조제2항)

1)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·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이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로 일원화(2016.1.19.)됨에 따라 법령 명 현행화

2)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중 “감정평가업자”가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2020. 4. 7. 개정되어 용어 현행화

나. 대부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 조정(안 제22조제1항)

국유림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 금액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개정

다. 국유림 내 공동산림사업 권한 위임 확대(안 제28조제1항)

공동산림사업은 지방산림청장에게만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으나, 국유림의 이용 확대 및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목원장, 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도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

##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

##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(이하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(이하 “감정평가법인등”이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을 “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, “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정평가업자에는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에는”으로, “감정평가업자를”을 “감정평가법인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감정평가업자가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이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”를 “감정평가법인등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전단 중 “10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2호”를 “제11호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조(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)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(이하 “감정평가업자”라 한다)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<u>감정평가업자</u>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. | 제13조(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) ① ----- 「 <u>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2조제4호에 따른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(이하 “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”이-----, --- 「 <u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</u> 」-----<br>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-----<br>-----. |
| ② 제1항에 따른 <u>감정평가업자</u> 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<u>감정평가업자</u> 를 포함시킬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에는 -----<br>----- <u>감정평가법인등</u> 을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업자가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

⑤ (생략)

제21조(대부료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은 매년 결정하며,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(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)을 적용하여 산출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2조(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)

①법 제23조제2항 전단에 따라  
대부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려

3. ----- 감정평가  
법인등이 -----

⑤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대부료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

감정평가법인등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)

① \_\_\_\_\_

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이 100만  
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 
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  
 다.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 
 는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  
 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고시이자  
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 
 붙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산림청장  
 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 
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제  
 주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  
 치도지사에게 재산관리 사무가  
 위임된 국유림에만 해당한다),  
 국립수목원장, 산림항공본부장,  
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, 지방  
 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  
 장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2호부  
 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  
2호까지의 권한은 국립수목원  
 장, 산림항공본부장, 국립산림  
 품종관리센터장 및 국립산림과  
 학원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,  
 제4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 
 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

----- 50만원

-----

-----

---.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----- 제11

호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에게 위임하지 아니한다.

1. ~ 21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-----.

1. ~ 21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| (042) 481 - 4098 |